

재단의 투명경영과 청렴도 향상 도모

1 기본 방침

- 지속가능한 공정·청렴의 경영환경 조성 지원 ⇒ 건전한 재단환경 확립
 - 내부감사규정(감사업무) 준용
 -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사항 점검 ⇒ 깨끗한 직장 풍토 조성 도모
 - 상업시설 청렴·부패취약분야(지도관리) 점검
 - ⇒ 상기 기획감찰제 운영으로 공직비리예방, 생활밀착형 특별점검 안전사고 사전 예방
- 수평적·협력적 감사로 재단 경쟁력 강화 및 정책효과 극대화
-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한 안전 공공기관 실현

2 감사 추진 방향

- 2020년도 상급기관 감사운영방향 및 계획 적극반영 ⇒ (통보시 반영)
- 2020년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 ⇒ 부패방지 시책 평가 지표 적극 이행
- 청탁금지법 준수를 통한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⇒ 청정기관 확립
- 투명경영실천 및 상급기관 정책부응을 통한 청렴공공기관 제고
 - 근무기강 확립, 반부패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
 - 다양한 상급기관 청렴도 향상 시책 및 제안 적극 이행
 - 금품수수, 복무위반, 문서·보안 위반, 관행적 비위, 제도개선 등
 - 공사·용역 계약 적정성 상시 모니터링

3 감사반 운영

- 감사반 운영시기 : 연중
- 감사대상 및 적용 범위 : 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한 직원(재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)
- 감사반 운영
 - 감사 반장 : 경영기획 TF팀 부장, 담당자
 - ⇒ 필요시 내·외부 합동감사반 편성 운영
- 감사방법 : 상시(노출·비노출) 및 현장중심 직무감사

■ 감사범위 : 내부감사규정 제4조(감사업무)

- 경영업무 전반에 대한 회계, 재무기록 및 계산의 적정성
- 사업계획, 업무집행의 적정성, 합리성 및 제규정 준수 여부
- 부정, 오류, 허위 등의 적발
- 업무지도, 개선사항의 지적 및 건의
- 기타업무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

4 월별 감사 추진계획

■ 감사범위 : 내부감사규정 제4조(감사업무)

구분	감사구분	감사대상	비고
연중	부패취약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상업시설 운영 형태 및 안전시설 관리형태 감찰 (갑질근절) ●내부 상업시설 지도관리 점검 ⇒ 금품수수, 관리태만, 안전시설 단속등 	
연중	공사계약 물품구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청렴서약제 이행(적용대상 : 모든공사, 물품, 구매 적용)/규정개정(예정) ⇒ 외부용역 및 공사발주에 따른 임직원 행동강령 서약서 ●물품계약분야 비리 차단 ⇒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이행률 등 ↔ 계약분야 비리 차단 ●공사·물품 계약 수의계약(입찰) 적정성 감찰 	
연중	불시복무감사	●복무위반, 문서·보안 위반, 관행적 비위, 제도개선 등	
1월	설연휴근무기강	● 행동강령 준수실태 점검	
4월	2020 선거대비 근무기강 감사	● 제21대 국회의원선거대비 감사	
07월	하계휴가 대비 근무기강 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행동강령 등 준수실태등 집중 점검 ⇒청탁금지법,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집중 점검 ⇒외부강의 등 신고 이행실태 점검 	(불시)
09월	반부패청렴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전 임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⇒청탁금지법, 행동강령, 부패방지법, 공익신고 등 	(계획)
09월 10월	추석절 대비 근무기강 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행동강령 등 준수실태등 집중 점검 ⇒향응·금품·선물 수수 행위등 집중 점검 ●주요 시설 보안상태, 재난등 상황관리 유지상태 점검 	(불시) (불시)
11월 12월	연말연시 대비	●행동강령 등 준수실태등 집중 점검	(불시)

	근무기강 감사	⇒외부강의 신고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 운영 ⇒경기도조사담당관 특별감찰 계획 수립시 자체감사계획 수립 •개인정보보호등 보안실태 점검, 개인 PC·내부자료 정보유출 등	
--	---------	--	--

5 **감사 조치계획**

- 감사 이행결과 문제점 도출시 담당팀(자) 조치 요구
- 업무 처리 부적정, 공직기강 해이행위는 시안에 따라 관련자 연대문책
 - 사법기관 고발 등 엄정한 기준 적용
-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은 면책등 조치
- 유사 비위 재발방지 및 정책반영을 통한 개선 진행